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 정원을 2025년부터 5년간 220명 증원〉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62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사 정원 변동 추이	3
3.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진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의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 증원하는 것으로, 연도별 증원규모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각각 4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50명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검사 증원 방안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증원규모	40명	40명	40명	50명	50명	220명

[표 2] 안 제1조 및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u>2,292명</u> 으로 한다.	제1조(검사의 정원) ----- ----- <u>2,512명</u>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u>220명</u> 중 <u>4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u> 시행하고, <u>4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u> 시행하며, <u>4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u> 시행하고, <u>5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u> 시행하며, <u>5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2. 검사 정원 변동 추이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 이후 15차례의 개정¹⁾을 거치면서 검사 정원은 1956년 19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2,292명으로 증가하였음.

2000년 이후 「검사정원법」은 4차례 개정되었는데, 검사 정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00명, 2006년부터 2007년까지 80명,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75명²⁾,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50명이 각각 증원되었음.

참고로 같은 기간 판사 정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50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70명, 2007년 예비판사 제도³⁾ 폐지에 따라 300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70명이 각각 증원되었음.

[표 3] 2001년 이후 검사 및 판사 정원 변동 추이

(단위: 명)

연도 (개정연도)		2001	2002~2005 (2001)	2006~2007 (2005)	2008~2010 (2007)	2015~2019 (2014)
검 사	증원규모	-	300	80	275	350
	정 원	1,287	1,587	1,667	1,942	2,292
판 사	증원규모	-	350	770		370
	정 원	1,724	2,074	2,844		3,214

주: 2006~2010년 사이 판사 정원의 증원분(770명)에는 2007년 예비판사 제도 폐지에 따라 예비판사 정원만큼의 증가분 300명이 포함되어 있음

1) 검사 정원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1962년 폐지·제정*(각급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과 1986년 타법개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은 제외

※ ‘폐지·제정’은 ‘전부개정’ 방식과 함께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의 부칙으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2) 2005년 개정 시 2006~2010년 동안 220명 증원을 예정하였으나, 2007년 개정 시 2008~2010년 동안 2005년 개정분(140명)에 더하여 135명을 추가로 증원하였음.

3)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간 재판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

3. 검토의견

개정안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등으로 인한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를 강화하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송무 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통계자료 등을 통해 개정안의 증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공판중심주의⁴⁾ 강화에 따라 공판검사의 업무 부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2024년 10월 기준 공판검사 총 인원은 26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3% 증가한 반면, 형사재판부 수는 500개로 10년 전에 비해 30.2% 증가함. 이로 인해 공판검사 1인당 담당재판부는 2014년 1.7개에서 2024년(10월 기준) 1.86개로 7.6% 증가하였음.

또한,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2개 이상 재판부를 담당⁵⁾하는 공판검사 수는 2014년 146명(공판검사 총 인원 대비 64.6%)에서 2024년(10월 기

4)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판결). 이 때 법정에서의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를 의미하며,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음.(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3판)」, 법문사, 2021. 3, p.453-454

5) 형사재판부 1개 당 공판검사 1명이 대응되는 구조이며, 형사사건 증가,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1명의 공판검사가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가 늘어남.

준) 220명(공판검사 총 인원 대비 81.8%)으로 50.7% 증가하였음.

[표 4] 공판검사 관련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0월	'14→ '24.10 증가율
공판검사 총 인원	226	232	232	244	250	248	264	276	280	275	269	23.0%
2개 이상 재판부 전담 공판검사수	146	149	156	163	172	177	179	193	188	195	220	50.7%
형사재판부 수	384	394	397	422	438	440	439	470	473	488	500	30.2%
공판검사 1인당 담당재판부	1.7	1.7	1.71	1.73	1.75	1.77	1.66	1.7	1.68	1.77	1.86	7.6%

자료: 법무부

둘째, 사건 난이도 증가, 인권보장 및 절차 준수 요구 증대 등에 따른 수사업무 부담 증가 및 사건 처리기간 지연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사 담당검사 1인당 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2024년(10월 기준) 1인당 접수 기준 7.9건, 처분 기준 7.69건으로, 2020년 5.97건(접수), 5.84건(처분)대비 각각 약 2건이 증가함. 2014년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 350명이 증원⁶⁾되어 해당 기간 1인당 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감소 추세(접수 기준 2015년 6.7건 → 2019년 6.46건)였으나, 정원이 동결된 2020년 이후 사건 부담량은 다시 증가 추세임이 확인됨.

6) 2015년 90명, 2016년 80명, 2017년 70명, 2018년 70명, 2019년 40명 각각 증원

[표 5] 수사 담당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1일 평균)

(단위: 건/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월
접수 기준	6.70	6.86	6.29	6.12	6.46	5.97	5.53	6.12	6.80	7.90
처분 기준	6.71	6.83	6.26	6.08	6.36	5.84	5.90	6.03	6.75	7.69

주) 검사 정원은 2014년까지 1,942명이었다가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2,292명으로 350명 증원되었으며, 2020년 이후 동결됨.

자료: 법무부

또한, 검찰의 사건처리기간은 2024년(8월 기준) 건 당 평균 24.8일로, 2014년 18.1일 대비 6.7일(37.0%) 증가하였으며, 건 당 검찰 생산기록 역시 2014년 13.7쪽에서 2024년(8월 기준) 29.1쪽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형사 공판사건의 확정시까지의 평균 처리기간 또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표 7] 참조).

[표 6] 사건처리 기간 및 기록 쪽수 증감 현황

(단위 : 일, 쪽)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사건처리기간	18.1	17.4	18.2	18.3	20.0	20.5	23.4	22.9	23.9	26.1	24.8
건당 검찰 생산기록 쪽수	13.7	13.9	15.0	17.2	19.4	20.2	21.6	26.3	23.4	27.5	29.1

자료: 법무부

[표 7] 형사 공판사건 확정시까지 평균 처리기간

(단위 : 일)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5→'23 증가율
1심 합의	131.0	175.0	129.7	121.8	136.3	156.0	181.4	185.2	186.6	42.4%
1심 단독	97.5	123.6	108.1	115.3	125.8	146.4	162.3	161.4	154.5	58.5%
항소심(고법)	308.3	395.7	310.2	324.3	338.4	395.7	426.3	396.1	392.8	27.4%
항소심(지법)	315.7	413.7	316.4	327.0	353.5	413.7	428.9	465.5	469.4	68.7%

자료: 법무부(사법연감 토대로 작성)

한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해 시정조치요구 등 통제권을 갖고 있음.⁷⁾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015년 34.3만 건→2023년 64만 건)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사법경찰관 강제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바, 인권보호부⁸⁾ 설치 및 인권보호 전담검사

- 7)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8) 인권보호부는 2021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에 따라 송부한 기록에 따른 재수사요청 및 송치요구 검토 업무,

배치를 위한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표 8] 사법경찰관 영장신청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사경 영장 신청(전체)	343,213	351,436	361,447	401,565	441,604	461,386	498,280	552,788	639,875	500,964
(압수·수색 영장)	190,440	194,418	212,439	261,861	302,974	337,048	385,764	442,928	512,803	408,618

자료: 법무부

[표 9] 사법경찰관리 수사에 대한 검사 시정조치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수사중지 송부 처리 (전체)	검토 후 반환 (전체 처리 대비 반환 비율)	구제신청에 의한 반환 (전체 처리 대비 구제신청 반환 비율)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 (전체 처리 대비 시정조치요구 비율)	시정조치요구 후 송치요구 (시정조치요구 대비 송치요구 비율)
2021	85,858	83,208 (96.91%)	25 (0.03%)	2,625 (3.06%)	5 (0.19%)
2022	78,976	76,775 (97.21%)	0 (0%)	2,201 (2.79%)	1 (0.05%)
2023	83,436	81,636 (97.84%)	4 (0.005%)	1,796 (2.15%)	5 (0.28%)

자료: 법무부

셋째, 범죄피해자 지원 인력 확충 및 증가하는 범죄수익 환수 업무 대응을 위한 증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미리 병역을 마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익법무관이 크게 감소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국가송부 등 업무에

경찰에서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여부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함.

공익법무관을 배정하지 못함(2018년 41명 → 2024년 0명)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각종 자금세탁 범죄 건수와 범죄수익 추징보전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는바([표 8] 참조), 검사 증원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관련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고,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표 10] 범죄수익환수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월)	'17→'23 증가율
추징보전액	5,491	24,390	11,357	29,438	59,543	34,480	67,364	70,539	1,126.8%
자금세탁범죄	547	827	960	980	919	1,962	2,756	2,040	272.9%

자료: 법무부

넷째, 휴직자 증가 및 검찰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충원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휴직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아 대체인력 고용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음. 검사 휴직 인원 추이를 보면, 연도말 기준 2015년 82명에서 2023년 105명으로 증가(28.0%)함에 따라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됨.

[표 11] 연도별 검사 휴직 인원(연도말 기준)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2	96	78	79	96	104	97	95	105

자료: 법무부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2027년 3월 인천북부지청, 2031년 3월 세종지방검찰청이 각각 개청 예정인바, 두 신규 검찰청사 개청에 따라 2031년까지 58명의 검사 배치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2] 검찰청 신규 청사 개청 등에 따른 증원소요

개청 예정 검찰청	검사 소요정원 예상	비고
인천북부지청	34명	- 2027. 3. 개청 예상
세종지방검찰청	24명	- 2031. 3. 개청 예정

자료: 법무부

다만, 검사 증원은 다음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함.

2020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사체도가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와 업무량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검사 증원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중요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②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⁹⁾을 폐지하는 한편, 경찰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음.¹⁰⁾ 또한, 2022년 5월 9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져(2022년 9월 10일 시행)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추가로 축소되었음.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직접 접수 고소·고발 사건 및 검사인지 사건)은 2023년 31,464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43,487건 대비 27.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13] 검찰 직접수사(검사실 및 수사·조사과) 처리사건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검찰 직접접수 고소·고발 사건(A)	36,059	39,119	36,945	39,557	27,529	26,326
검사인지 사건(B)	9,114	7,724	6,542	4,447	3,927	5,138
검찰 직접수사 사건(A+B)	45,173	46,843	43,487	44,004	31,456	31,464
기 소 (비중)	14,713 (32.6%)	14,051 (30.0%)	12,861 (29.6%)	8,075 (18.3%)	4,781 (15.2%)	5,564 (17.7%)

주: 처리시점 기준

자료: 법무부

9) 「구 형사소송법」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에서 해당 조항 삭제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 검찰의 형사사건 접수 실적은 2023년 169만 8천여 건(신수 기준)으로 2020년 169만 4천여 건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제1항 위임 규정¹¹⁾을 근거로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 범위가 조정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표 14] 연도별 형사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8.
1,816,233	1,950,674	1,694,482	1,548,206 (송치: 1,072,653)	1,621,168 (송치: 1,170,810)	1,698,437 (송치: 1,206,419)	1,268,981 (송치: 833,479)

주1) 2020년까지의 접수건수에는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건수가 포함된 반면, 2021년부터는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개념이 도입되면서 접수건수에서 제외되고 있음.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기록(2021년 불송치 389,132건, 수사중지 86,421건, 2022년 불송치 371,411건, 수사중지 78,947건, 2023년 불송치 408,417건, 수사중지 83,601건)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송부되고 있으며, 과거와 동일하게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요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2)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신수) 기준으로, 전년도에 접수외더 이월된 건수(구수)는 제외
자료: 법무부

한편, 주요 유럽국가 및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검사 수를 비교하면, 한국(4.0명)은 프랑스(3.2명)와 일본(1.6명)에 비해 높지만, 영국(잉글랜

11)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드·웨일즈, 5.0명)과 독일(7.7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¹²⁾

[표 15] 인구 10만명 당 검사 수 국제 비교

(단위: 명)

한국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프랑스	독일	일본
4.0	5.0	3.2	7.7	1.6

주: 한국,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준, 유럽 국가의 경우 2022년 기준

자료: European judicial systems CEPEJ Evaluation Report 2024(2022년 data 기준) 및 법무부 제출자료(일본)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 정원의 증원 여부 및 적정 증원 규모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최근 형사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검사의 업무량과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 형사사건 처리 기간, 인구 10만명 당 검사 수 등의 증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더하여 범죄 유형의 다변화·복잡화·국제화·지능화 추세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 필요성, 휴직 및 청사 신설에 따른 충원 소요,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12)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검사의 1인당 사건 인원은 일본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임.

연도	국가	인구수	검사 수 (명)	사건인원 (명)	인구 10만명당 검사 수(명)	검사 1인당 사건인원(명)	일본 대비
2020년	한국	51,836,000	2,120	2,255,553	4.1	1,064	2.4배
	일본	125,810,000	1,977	869,853	1.6	440	
2021년	한국	51,769,000	2,143	1,972,372	4.1	920	2.1배
	일본	125,502,000	1,967	858,756	1.6	437	
2022년	한국	52,672,000	2,086	2,103,704	4.0	1,008	2.3배
	일본	123,750,000	1,980	877,271	1.6	443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동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검사 증원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37억원(연평균 107억원)으로 추계됨(참고자료 2).

한편, 판사에 대해서도 정원을 현재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증원¹³⁾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380)」이 발의되어(2024. 11. 8)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6788-5048

13)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임.

참고 1 검사 및 판사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정원(증감)			연도	정원(증감)		
	검사(A)	판사(B)	A/B		검사(A)	판사(B)	A/B
1976	397 (20)	534 (17)	74.3	1998	1,137 (50)	1,704 (140)	66.7
1977	417 (20)	564 (30)	73.9	1999	1,207 (70)	1,854 (150)	65.1
1978	437 (20)	594 (30)	73.6	2000	1,287 (80)	1,934 (80)	66.5
1981	467 (30)	624 (30)	74.8	2001	1,287 (-)	1,994 (60)	64.5
1982	497 (30)	674 (50)	73.7	2002	1,357 (70)	2,094 (100)	64.8
1983	527 (30)	724 (50)	72.8	2003	1,427 (70)	2,174 (80)	65.6
1984	557 (30)	774 (50)	72.0	2004	1,507 (80)	2,274 (100)	66.3
1985	587 (30)	824 (50)	71.2	2005	1,587 (80)	2,374 (100)	66.8
1986	627 (40)	874 (50)	71.7	2006	1,627 (40)	2,424 (50)	67.1
1987	667 (40)	974 (100)	68.5	2007	1,667 (40)	2,504 (80)	66.6
1988	707 (40)	1,024 (50)	69.0	2008	1,725 (85)	2,604 (100)	66.2
1989	747 (40)	1,074 (50)	69.6	2009	1,847 (95)	2,724 (120)	67.8
1990	787 (40)	1,124 (50)	70.0	2010	1,942 (95)	2,844 (120)	68.3
1991	827 (40)	1,174 (50)	70.4	2011~2014	1,942 (-)	2,844 (-)	68.3
1992	867 (40)	1,224 (50)	70.8	2015	2,032 (90)	2,894 (50)	70.2
1993	907 (40)	1,274 (50)	71.2	2016	2,112 (80)	2,954 (60)	71.5
1994	947 (40)	1,324 (50)	71.5	2017	2,182 (70)	3,034 (80)	71.9
1995	987 (40)	1,374 (50)	71.8	2018	2,252 (70)	3,124 (90)	72.1
1996	1,037 (50)	1,434 (60)	72.3	2019	2,292 (40)	3,214 (90)	71.3
1997	1,087 (50)	1,564 (130)	69.5	~현재	2,292 (-)	3,214 (-)	71.3

*주 : 판사 정원에는 1997년 도입되어 2007년 폐지된 예비판사 정원 포함

참고 2 검사 증원에 따른 재정소요액 (국회예산정책처)

○ 향후 5년간 재정소요 추정액: 536억 9,900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2025년도 채용 (40명)	보수	2,877	2,932	2,988	3,045	3,102	14,944
	기관부담금	377	387	397	408	419	1,988
	기본경비	124	126	129	131	134	643
	자산취득비	196	—	—	—	—	196
	소계	3,574	3,445	3,514	3,584	3,655	17,772
2026년도 채용 (40명)	보수	—	2,932	2,988	3,045	3,102	12,066
	기관부담금	—	387	397	408	419	1,611
	기본경비	—	126	129	131	134	520
	자산취득비	—	200	—	—	—	200
	소계	—	3,646	3,514	3,584	3,655	14,398
2027년도 채용 (40명)	보수	—	—	2,988	3,045	3,102	9,135
	기관부담금	—	—	397	408	419	1,224
	기본경비	—	—	129	131	134	394
	자산취득비	—	—	205	—	—	205
	소계	—	—	3,719	3,584	3,655	10,957
2028년도 채용 (50명)	보수	—	—	—	3,806	3,878	7,684
	기관부담금	—	—	—	510	524	1,033
	기본경비	—	—	—	164	167	331
	자산취득비	—	—	—	261	—	261
	소계	—	—	—	4,741	4,569	9,310
2029년도 채용 (50명)	보수	—	—	—	—	3,878	3,878
	기관부담금	—	—	—	—	524	524
	기본경비	—	—	—	—	167	167
	자산취득비	—	—	—	—	267	267
	소계	—	—	—	—	4,836	4,836
합계		3,574	7,091	10,746	15,492	20,370	53,699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